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7.(금)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보건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이유

- 교육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19 유행 전후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비만, 스트레스 인지·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아침식사 결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과일채소 섭취는 주는 반면 인스턴트 음식섭취는 증가하는 등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음주와 흡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새로운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교육부도 2021년 9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2조3 등에 따라 2023년 2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학교 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2022.3.24. 시행) >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도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sup>1)</sup>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을 연간 17차시 이상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학 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실시 학교 수
			보건과목 선택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초	256	211	0	1.7	1.7	1.8	2.2	11.4	8.2	4.6	256
중	128	93	10	5.8	5.4	4.2				5.2	128
고	82	81	27	4.6	5.9	5.4				5.3	78
특수	10	10	4	10.8	3.8	2.5	2.9	8.7	8.3	4.8	10
계	476	395	41								472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운영(2021~2022학년도)>**

연수과정	대상	기간	방법	이수인원	시간	비고
2021. 신규보건교사 및 보건업무담당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신규·저경력보건교사 및 보건업무담당교사	2021.5.3. ~12.6.	원격연수 (컨텐츠 제공형)	153	4	연중 운영
보건교사를 위한 수업 코칭의 이해와 수업자료 개발	보건교사	2021.12.7 ~10.	대면	45명	4	3기 운영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2022. 학교보건업무 역량 강화 연수	(초등)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2022.5.10 .	비대면	119명	2	3기 운영
	(중등)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2022.5.12 .	비대면	105명	2	3기 운영
	보건업무담당교사	2022.5.13 .	비대면	18명	2	3기 운영
2022. 예술과 치유를 담은 보건교육 역량강화 연수 I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 담당교사	2022.12. 16.~21.	대면	58명	4	3기 운영
2022. 예술과 치유를 담은 보건교육 역량강화 연수 I	보건(교육담당)교사	2022.12. 20.~23.	대면	66명	4	4기 운영

보건업무담당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확대하는 등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최근 3년 보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예산	
		교육부 특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20년	-보건업무담당교사(저경력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1회)	-	1
	-학교보건컨설팅장학(14교)		
	-보건교과연구회(2팀)	-	6
2021년	-학교보건컨설팅장학(28교)		
	-보건업무담당교사연수(1회)	-	12
	-보건교사역량강화연수(3회)		
	-보건교과연구회(2팀)	-	6
2022년	-건강증진프로그램(약물 오·남용 예방) 운영(7교)		
	-학교보건컨설팅장학(54교,98회)		
	-학교보건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9기)	21	37
	-보건교육역량강화연수(7회)		
	-보건(담당)교사 회복탄력성 강화 연수(2회)		
	-보건교과연구회(1팀)	-	3
합계		21	65

- 이에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업무담당 직원 부족과 업무 과다, 보건교육 관련 내용의 분산과 중복 및 연계성 부족,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된 ‘학생’ 과 ‘보건교육’에 대한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분명히 하였음.  
다만 학생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에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보건교육이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내에 보건팀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보건법」 제15조와 같은 법<sup>1)</sup> 시행령 제23조<sup>2)</sup>에 근거한

- 1) 학교보건법: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략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 2)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생략
  2. 생략
  3. 보건교사의 직무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규정이나 교육감의 실질적인 보건교사 정원 확보와 배치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 8조에 보건교육센터 설치와 안 제9조에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한 것은 교육감의 조직구성과 운영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보건교육 거점학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보건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행복한 삶의 중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교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역량 함양은 중요하다 할 것임.
- 이 같은 측면에서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문 체계와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